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인공지능사업자 국내대리인 요건 및 규제 강화〉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933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국내대리인으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및 국내대리인 연락 관련 정보<br>공개 등 ..... | 3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5. 12.

다. 회 부 일 : 2026. 5. 13.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기술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책임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이 변경된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의 확인이 곤란할 수 있음. 또한 국내대리인의 연락 가능 상태를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책임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

성을 제고하고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책임성을 명확히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6조 및 제43조).

### Ⅲ. 검토의견

#### 1. 국내대리인으로 국내 법인 우선 지정 및 국내대리인 연락 관련 정보 공개 등

#####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제도에 변경신고를 포함하도록 하고, 인공지능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36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제4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 개정안은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국내대리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담당자의 성명·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도록 하며, 국내대리인에게 업무 수행 담당자 지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상시 연락 조치 의무를 부과함(안 제35조제4항부터 제6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br>-----<br>----- |

| 현행                                                                                                           | 개정안                                                                                                          |
|--------------------------------------------------------------------------------------------------------------|--------------------------------------------------------------------------------------------------------------|
|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u>신고</u> 하여야 한다. | -----<br>-----<br>-----<br>-----<br>-----<br>----- <u>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u> -----.                              |
| 1. ~ 3. (생략)                                                                                                 | 1. ~ 3. (현행과 같음)                                                                                             |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br><u>&lt;후단 신설&gt;</u>                                                    | ② ----- .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 <u>&lt;신설&gt;</u>                                                                                            |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
| <u>&lt;신설&gt;</u>                                                                                            |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인공지능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 ③ (생략)                                                                                                       | ③ (현행과 같음)                                                                                                   |
| <u>&lt;신설&gt;</u>                                                                                            | ④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제4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 <p>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통보하여야 한다.</p> <p>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p> <p>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p> <p>3. 제5항에 따른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p> <p>⑤ 국내대리인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상시 연락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변경의 방법·절차, 제4항에 따른 공개 및 통보 방법·절차, 제5항에 따른 연락가능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43조(과태료) ① -----<br/>-----<br/>-----.</p> |

| 현행                              | 개정안                                                           |
|---------------------------------|---------------------------------------------------------------|
| 1.·2. (생략)<br><u>&lt;신설&gt;</u> | 1.·2. (현행과 같음)<br>2의2.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u>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u>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② (생략)                          | ② (현행과 같음)                                                    |
| 부칙                              |                                                               |
|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다. 검토의견

- 현행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 중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sup>1)</sup>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함.
- 국내대리인은 ①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 이행 결과의 제출, ②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③ 제34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 업무를 수행<sup>2)</sup>함.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9조(국내대리인 지정 사업자의 기준) ①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2. 인공지능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3. 전년도 말 기준 해당 인공지능사업자의 인공지능제품 및 인공지능서비스에 대한 직전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명 이상인 인공지능사업자
4.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실이 있는 인공지능사업자

2)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 국내대리인 지정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주요 의무가 이행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임.
- 참고로, 「개인정보보호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국내대리인 제도를 두고 있음.
- 「개인정보보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직접 설립하거나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sup>3)</sup>.
- 또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국내대리인의 성명과,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와 같이 기본적인 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터넷사이트와 같이 일반 대중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sup>4)</sup>.

---

하여야 한다.

1. 제32조제2항에 따른 이행 결과의 제출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해당 여부 확인의 요청
3. 제3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성·신뢰성 확보 조치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같은 항 제5호에 따른 문서의 최신성·정확성에 대한 점검을 포함한다)

### 3)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 의무에 변경신고가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법인 지정,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연락수단 확보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국내대리인 지정에 대한 신고 제도를 두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이 변경되거나 신고한 사항 중 변경이 있을 때 별도의 변경신고를 거쳐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변경 신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 또한, 향후 인공지능 시장의 확대에 따라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의 국내 진출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은 국내대리인 지정 신고에 변경신고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신고의 대상이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문언상 국내대

#### 4)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를 인터넷 사이트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리인을 변경하여 지정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 외에 기타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하는 것인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개정안의 취지는 인공지능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 신고 의무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에 따른 국내대리인 지정 변경신고를 국내대리인의 변경에만 적용할지 국내대리인은 변경하지 않았으나 관련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까지 변경 신고하도록 할 것인지 검토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음.

- 만약, 국내대리인 자체가 변경 지정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를 명확하게 반영하도록 입법례<sup>5)</sup>를 고려하여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 둘째, 개정안은 국내대리인이 법률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국내대리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공개하여야 하는 정보에 담당자의 성명,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하고 있는데,

담당자 정보 공개의 필요성과 공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을 이 익형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인터넷사이트 등에 담당자 정보를 변경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타 입법례에서 국내대리인에 대한 정보 공개 외에 담당자의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례는 아직 없다는 점을

---

5)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②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공사감리자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안 제43조제1항제2호의2는 국내대리인 미지정이 아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국내대리인 지정을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로 조문을 수정<sup>6)</sup>하는 것이 타당함.

## 다. 정부 및 관련 단체 의견

###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 동의

- 해외 사업자의 국내 책임성 확보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변경신고’ 및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의 필요성에 공감하나,  
안 제36조제2항에 따라 신설되는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의무’의 경우

---

6) 참고로, 유사 입법례는 다음과 같음.

####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1.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제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8(국내대리인의 지정)**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중에서 선택한 자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2.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제10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의3. 제22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범위가 불명확할 우려가 있는바, 하위법령에 판단기준을 위임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그리고, ‘담당자 정보의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측면과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하고 ‘상시 연락 가능 조치’는 현행법상 신고사항 보완으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바, 신규 의무 부과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국내대리인에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면 해외 사업자의 국내 진출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안 제43조제1항제2호의2와 같이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면 제재 적정성 측면에서 단계적 절차(권고, 시정명령 등)를 전제로 구체화하는 방안을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음.

|       |
|-------|
| 문 의 처 |
|-------|

|              |
|--------------|
| 02)6788-5230 |
|--------------|